

제228회 임시회
2004.6.23.(금)

검 토 보 고 서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6월 8일

○ 회부일자 : 2004년 6월 8일

3. 제안이유

○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신설 (제5조의2).

나. 토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 조정 (제13조, 제16조의2, 제18조, 부칙)

○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함.

○ 토요일 휴무를 2004. 7. 1부터 월 2회, 2005. 7. 1부터는 전면시행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는 폐지함.

○ 연가일수를 1~2일 축소 운영(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제23조 별표 3)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주5일근무제 도입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식 사회에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중소기업과 경제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아울러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 근무시간과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5조의2 “공무원의 비밀입수” 조항의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